

#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04 호
----------	----------

발의년월일 : 2010. 2. 19.

발 의 자 : 김홍식 의원의 7명

##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군수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함
- “편의시설”은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함,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함

### 나. 등산로 지정 관리대상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군수는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함
-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함.

**다.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위탁자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8조)**

- 군수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라. 등산로 보호와 안전을 위한 휴식년제 실시(안 제9조)**

-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음.

**마. 등산로 및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안 제10조)**

- 누구든지 휴식년제를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0. 2. 19 ~ 3. 10.

- 집행부 의견조회 : 2010. 2. 19 ~ 3. 10. 의견 없음

나. 관계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고성군 등산로 현황 : 불임

**4. 본 문 : 불임과 같음**

# 고성군 등산로 현황

2010. 1. 현재

시군별	위 치	산이름	노선(구간)	연장거리
계	18	55	149.70	79.00
도시공원		1	1	5.70
	고성읍	남산	1구간(보광사-정상-수남리)	5.70
도립공원	소계	1	10	20.20
	개천면	연화산	1구간 (연화주차지-연화1봉-연화산-남산-주차지)	4.60
			2구간 (옥천사-35.갈림길)	0.60
			3구간 (청련암-40.갈림길)	0.30
			4구간 (연화주차지-44.갈림길)	1.20
			5구간 (영오면오서-옥천사 주차지)	7.70
			6구간 (전골못-연화2봉갈림길)	0.70
			7구간 (옥동새마을창고-29.갈림길)	3.00
			8구간 (약수터-돌탑-성고개)	1.10
			9구간 (연화저수지-돌탑)	0.70
			10구간 (백련암-55.갈림길)	0.30
일반	소계	16	44	123.80
	고성읍	벽방산	1구간 (은월리 고성레미콘-정상-만화방초)	4.30
			2구간 (은월가든-10.갈림길)	1.80
			3구간 (월평리-매바위산-정상)	3.60
	고성읍	갈모봉	1구간 (휴양림주차지-산불초소-주차지)	4.60
			2구간 (삼봉리 고개-갈모봉정상)	2.30
			3구간 (삼산 병산-정상)	5.00
	하일면	좌이산	1구간 (가리미재-명덕재)	3.60
			2구간 (청룡사-15.갈림길)	1.20
	하이면	향로봉	1구간 (운홍사-정상-운홍사)	5.30
			2구간 (11.갈림길-22.갈림길)	0.30
			3구간 (친진암-29.갈림길)	0.80
			4구간 (운홍사-45.갈림길)	0.80
			4구간 (와룡리-정상)	2.20
			5구간 (수태재-정상)	4.10
			6구간 (갈림길-백암산-와룡리)	2.80
	상리면	수태산	1구간 (척정번리-정상-수태재)	3.40
			2구간 (문수암주차지-정상)	0.60
			3구간 (청량사-약수터)	1.20
			4구간 (보현암-정상)	0.90
	상리면	무이산	1구간 (선동저수지-정상-문수암주차지)	2.20
			2구간 (문수암-25.갈림길)	0.50
			3구간 (선동저수지-절골고개-보현암)	3.00

	대가면	무량산	1구간 (삼계부락-정상-큰재)	6.10
			2구간 (양화리고개-15)	1.10
	영현면	금태산	I 구간(계승사-어산-혼돈산)	4.90
	영오면	선유산	1구간 (연촌주차지-정상-양호리)	5.50
			2구간 (21.갈림길-28.갈림길)	0.50
	개천면	소곡산	I 구간(개천주유소-정상-선유산갈림길)	3.70
	구만면	깃대봉	I 구간(담티재-깃대봉-만수산-나동저수지)	8.80
	회화면	적석산	1구간 (주평고개-정상-옥수골)	4.50
			2구간 (적석암-정상)	1.20
			3구간 (옥수암-적석암)	0.70
	동해면	구절산	1구간 (북촌-상장고개)	3.70
			2구간 (폭포암-정상)	2.50
			3구간 (폭포암-53.갈림길)	1.10
	동해면	철마산	1구간(철마산-옹암산-시루봉-우두포)	7.10
	동해면	장군산	1구간(대바위-정상-동진교)	3.50
	거류면	거류산	1구간 (엄홍길전시관-정상-엄홍길전시관)	7.70
			2구간 (20.갈림길-43.갈림길)	0.30
			3구간 (장의사-47.갈림길)	0.10
			4구간 (당동리-샘터)	2.00
			5구간 (감동소류지-거북바위)	2.00
			6구간 (분기1~거북바위)	0.10
			7구간 (송산리-정상)	2.20

##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란 산림 내 등산, 산책, 탐방,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조성된 길로서 군수가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따른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등에 대하여 군수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한다.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등산로 지정관리 등) ① 군수는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제7조(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휴식년제)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산로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등산로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정관리 등산로 명칭, 등산로 구간, 등산로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